

## 「이태원 사고」 피해 지원 관련 군세 감면 동의(안)

|          |      |
|----------|------|
| 의안<br>번호 | 2219 |
|----------|------|

제출년월일: 2022. 12. 6.

제 출 자: 달성군수



### 1. 제안이유

- 2022. 10. 29. 「이태원 사고」 발생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군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 2. 주요내용

#### ○ 감면대상자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 ○ 세목별 감면내역('22 12 자동차세 ~ '23년 지방세 부과세목 등에 한함)

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 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2년 2기분 및 2023년 1·2기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다. 주민세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를 면제한다.

### 3. 감면 추계액: 71만 원

(단위: 만 원)

| 구 분   | 합계 | 재산세 | 자동차세 | 주민세 |       | 비고 |
|-------|----|-----|------|-----|-------|----|
|       |    |     |      | 개인분 | 개인사업자 |    |
| 합계    | 71 | 20  | 50   | 1   | 0     |    |
| 2023년 | 55 | 20  | 34   | 1   | 0     |    |
| 2022년 | 16 | 0   | 16   | 0   | 0     |    |

### 4. 기타사항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되는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지방의회 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 (2)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여

#### 다.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라. 관련공문

- (1)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입 지원방안 통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4442(2022.11.1.)
- (2)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 통보: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14067(2022.11.3.)

## 참고

## 관련 공문

※ 지방세입 지원방안 통보[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4442(2022. 11. 1.)]

###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입 지원 방안

◆ 이태원 사고로 발생한 유가족, 부상자 가족 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세 관련 법률상 지원 방안 안내

#### □ 지원 방안

##### ① 지방세 감면

- (자치단체 감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지방세 감면 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대상 지자체) 희생자 가족이 거주하거나, 그 가족의 재산세·자동차세 등을 관할하는 지자체

##### ② 지방세 부담 완화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기한연장)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한 신고, 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지방세기본법」 제26조)

\* 기한연장 결정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내 연장, 최대 1년까지 1회 추가연장 가능

- (징수유예)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등 조치\*(「지방세징수법」 제25조)

\* 징수유예 결정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내 연장, 최대 1년까지 1회 추가연장 가능

- (체납처분 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지방세징수법」 제105조)

##### ③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세무조사 유예) 사고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납세자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직권 등으로 세무조사 연기 가능(「지방세기본법」 제83조)

##### ④ 지방세외수입 부담 완화

- 세외수입 성격별로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등 지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체납처분 유예), 과태료·그 외 부과금(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유가족,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안내
  - ※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등의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활용 권고

## ※ 지방세 감면 기준 통보[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14067(2022. 11. 3.)]

###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쏠지 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1 추진 배경

-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해당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2.10.30.)
- 해당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필요

⇒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 마련

#### 2 지방세 감면 추진

##### ① 지원 방식

- 쏠 지방자치단체 감면동의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추진
  -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 감면 可(「지방세특별제한법」 §4④)

-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 병행 추진      \* 대상자 파악 후 일괄제공 예정

## ② 감면 대상자 (이하 “유가족”)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

## ③ 감면 내용

- '22. 12. 자동차세 ~ '23년 지방세 부과세목 등에 대해 면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3. 24., 2020. 1. 15., 2021. 6. 8.>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2020. 1. 15., 2021. 6. 8.>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31., 2016. 12. 27.>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⑦~⑧ (생략)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 1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의 적용 대상자로서 법 제2장 감면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감면 세목(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을 추가하려는 경우

②~④ (생략)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1. 15., 2021. 1. 5.>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1. 15.>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0. 1. 15.>

⑧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세 감면(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으로 한정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모를 반영한 비율을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비율에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각 비율의 합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 1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특정 지역에 소재한 국가기반시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특정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특구나 단지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⑨ 법 제4조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7항 본문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한다. <개정 2020. 1. 15.>

## □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2.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 1. 1.>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삭제 <2020.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3. 1. 1.,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2. 8., 2017. 7. 26., 2018. 12. 31., 2020. 12. 29., 2021. 12. 28.>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